

# 정 관

2012.10.12. 제 정  
2013. 7.30. 농식품부 허가  
2015. 3. 3. 농식품부 허가  
2016. 6.16. 농식품부 허가  
2018. 8.27. 농식품부 허가  
2020. 3.16. 농식품부 허가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본 법인은 "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(이하 "농재협"이라 한다)"라 칭한다. 영문 명칭은 "The Korea Association of Agricultural & Fishery Insurance on Natural Disaster(KAFIND)"으로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농재협은 변화하는 농어업환경에 대응하고, 새로이 발생하는 농어업분야의 재해실태조사 및 연구,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, 임산물, 양식수산물,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손해보상을 위한 손해평가인력의 교육 및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3.3., 2016.6.16.>

**제3조(조직)** 농재협 조직은 총회, 이사회, 회장, 사무처, 지회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회 둔다.<개정 2020.3. 16.>

**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농재협 사무소는 '서울특별시'에 둔다. 다만, 필요시 지방사무소(지회)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3.7.30., 2018.8.27.>

**제5조(사업)** 농재협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보험대상 현황, 피해 규모 및 원인 등 보험 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 통계자료를 수집·관리
2. 농어업 재해피해조사 및 대책연구

- 3. 농어업재해 손해평가인력 교육 훈련 <개정 2015.3.3>
- 3의2.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<신설 2016.6.16.>
- 4.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·연구,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의 진흥시책
- 4의2.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도서 출판 <신설 2015.3.3>
- 4의3. 농재협 발간물 등에의 광고 게재 <신설 2015.3.3>
- 5. 그 밖에 정부 또는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<신설 2015.3.3>

## 제2장 회원

- 제6조(회원)** ① 농재협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한다.<개정 2018.8.27.>
-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,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, 입회하여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한 자를 말한다.<개정 2020.3.16.>
- 1.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
  - 2.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손해평가사
  - 3. 농어업정책보험 조사·연구업무 종사자 <신설 2020.3.16.>
- ③ 준회원은 협회에 입회한 자 중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.
- ④ 특별회원은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 한다.
- ⑤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 경과되어야, 제8조제2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 경과하여야 새로이 입회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제목, 전문 개정 2018.8.27.> <개정 2020.3.16.>

**제6조의2(회원의 가입)** ① 농재협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농재협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의 가입절차 및 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 6. 16.> <개정 2020.3.16.>

**제7조(회원의 권리)** 농재협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3호의 권리만을 갖는다.<개정 2018.8.27.> <개정 2020.3.16.>

1.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2.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
3. 기타 농재협의 회지 등 발간물을 제공 받을 권리 등

**제7조의2(회원의 의무)** 농재협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 다만,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법령·정관·제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의무
2. 총회 및 이사회 등 결의 사항의 준수의무
3. 회비 납부의무

**제8조(회원자격의 상실)**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자격을 상실한다.<개정 2018.8.27.>

1.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
2. 제 7조의 2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제명결의 처분을 받았을 때
3.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
4.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그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
5.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서 3년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<신설 2020.3.16.>

**제9조(회원의 자격정지)** 협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<개정 2018.8.27.>

1. 농업재해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
2.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

**제9조의 2(포상 및 회원의 징계)** ① 회장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, 협회사업에 유공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 다만,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

②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농업재해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받았을 때
2. 정관 제7조의 2의 규정의 1호, 2호를 위반하여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쓸 때
3. 회원의 행위가 손해평가사 및 손해평가인의 품위를 손상케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
4. 회원으로써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

③ 제2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

1. 경고
2. 3개월 이하의 권리정지
3.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회원자격 정지
4. 제명처분

④ 회장은 회원의 포상 및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사항을 조사·심의 등을 할 수 있으며, 윤리위원회 구성, 회원의 업무배제 등 세부 내용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.

<본조 신설 2020.3.16.>

### 제3장 임원 및 직원

제10조(임원 및 감사) 농재협에는 다음의 임원과 감사를 둔다.

1. 회장 1인
2. 이사 15인 이내(회장 포함) <개정 2020.3.16.>
3. 감사 2인 이내

제11조(임원의 선임 및 해임) ① 회장은 이사, 정회원 또는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. <개정 2018.8.27.>

② 이사는 지회 총회에서 추천되어 총회의 의결을 받은 자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의 의결을 받은 자로 하며, 감사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은 자를 한다. <개정 2018.8.27.> <개정 2020.3.16.>

③ 임기중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④ 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며, 임원의 충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회장 등 임원의 선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8.27.>

제11조의 2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<본조신설 2020.3.16.>

1.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11조 5의 규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 6조에 의하여 손해평가사 및 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또는 손해평가인의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된 자
2.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3. 임원이 되고자하는 회원의 경우, 임원 선출공고일 현재 회비의 완납(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이 되지 아니한 자

4. 본 정관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. 다만,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**제12조(임원의 직무)** ① 회장은 농재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농재협을 대표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총회로부터 필요한 직무를 부여받아 수행한다.

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법인의 재정운영을 감사하는 일
2. 법인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
3. 재정운영 또는 업무집행에 있어 불법,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
**제13조(임원의 임기)** ①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을 통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다만, 이사가 궐위된 경우라도 궐위되지 않은 이사의 수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14조(임기만료 등의 경우)**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경우라도 이사의 수가 8인 미만인 때에는 임기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자격상실에 의한 퇴임)** 임원이 11조의 2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.<개정 2020.3.16.>

**제16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농재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**제17조(위원회)** 농재협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 분야별 위원회 및 농업재해보험 관련 조사, 연구, 관련 기술개발 및 보험제도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0.3.16.>

1.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2.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3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**제18조(사무처)** ① 농재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,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사무 총괄 책임자로 두고, 필요한 사무인력을 둔다.<개정 2013.7.30.><개정 2020.3.16.>

② 제1항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3.7.30.><개정 2020.3.16.>

③ 제1항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개정 2013.7.30.><개정 2020.3.16.>

④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3.16.>

⑤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규정, 급여규정, 복무규정 등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13.7.30.><개정 2020.3.16.>

**제19조(사무총장의 임기)** 제 18조 제1항에 규정한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3.7.30.><개정 2020.3.16.>

**제19조 2(명예회장 및 고문)** ①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외부인사를 총회

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.<본조신설 2020.3.16.>

- ②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이나 경영·법률·노무·회계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## 제4장 회의

- 제20조(회의 종류)** ① 농재협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며,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- ③ 정기총회는 매 년 2월에, 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. 단,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.
  - ④ 총회에 필요한 정회원의 명부는 회의소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<개정 2018.8.27.>

- 제21조(회의의 소집)** ① 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회장은 이사회 결의나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③ 회장은 이사 3분의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④ 총회는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 및 부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, 회원들이 회의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연락하여야 한다.

- 제22조(총회의결)**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- 제23조(서면에 의한 의결 및 의결권의 위임)** ①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



다.

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,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을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24조(총회의 의결사항)**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의 승인
2. 수입·지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<개정 2020.3.16.>
3. 정관의 변경
4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5.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**제25조(이사회 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
2. 수입·지출의 예산 및 결산의 사전심의 <개정 2020.3.16.>
3.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전심의
4. 재산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3.16.>
5. 각종 규정의 제·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3.16.>
6. 기타 법인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

**제26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**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7조(회의록)**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·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2. 의결권 있는 회원 총수(이사회인 경우 이사 총수)
3. 의결권 있는 회원(정회원) 중 출석한 회원의 수(또는 이사의 수)

- 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
- 4. 의사의 경과, 회의안건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(안건별 의결 세부사항)
- 5. 참석 정회원이 서명한 참석회원 명부(별지 작성)

## 제5장 재정 및 회계

**제28조(재정수입)** 농재협(지회)의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18.8.27.>

1. 입회비
2. 연회비
3. 협회(지회) 발전 기여금 <개정 2018.8.27.>
4. 정부 위탁업무 수행비
5. 정부 출연금
- 5의2. 도서판매 수익, 광고 수익 등 농재협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 
<개정 2018.8.27.>
6. 기타 수입

**제28조의 2(사업준비금 적립 및 사용)** ① 농재협은 매년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의 20/100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<본조 신설 2020.3.16.>

- ② 매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,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.
- ③ 매년 결산 결과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 적립과 제2항의 손실금 보전 이후 잔여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.

**제29조(회비)** ① 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, 회원은 이를

납입하여야한다.<개정 2018.8.27.>

1. 입회비
2. 연회비
3. 특별회비(목적 수행을 위해 부과)

② 제 1항의 회비 금액은 총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8.27.>

**제30조(예산의 의결, 결산의 승인)** ① 농재협의 매년도 수입·지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0.3.16.>

② 수입·지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 말 현재 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0.3.16.>

③ 총회의 승인 이전에 집행하는 예산은 필요경비에 한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고, 특별히 사업성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에 의한다.<신설 2020.3.16.>

**제30조의 2(재산의 관리)** ① 농재협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<본조신설 2020.3.16.>

② 기본 재산은 설립 당시에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본 협회가 취득한 부동산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,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③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**제31조(특별회계)** 농재협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
제32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

제33조(정관의 변경) 농재협의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34조(해산, 잔여재산의 처분) ① 농재협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.

② 농재협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농재협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.

제34-2조(서류의 비치) 법인 사무소에는 다음의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.

<본조 부칙에서 이관 2020.3.16.>

1. 회원명부(현행으로 기록유지 하여야 함)
2.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
3.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
4. 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(증빙서 포함)
5. 연도별 회비수납 현황
6. 재산현황 등

## 제7장 보칙

제35조(시행세칙)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.

②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8.8.27.>

부 칙 <2012.12.10.>

제1조(발효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.

제2조(서류 비치) 삭제 <본조 본칙이관 2020.3.16.>

부 칙 <2013.7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3.3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6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된 자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18.8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3. 16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